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번 호	286
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16.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별첨 개정안과 같이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공유임야관리에 따른 대부(사용)요율 산정기준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정비하고,
-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임야 관리 조항중 존치가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5조

- 첨부 : 1.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2. 신. 구조문대비표
3. 기타 참고자료